

목 차

정 관	1
-----------	---

정 관

한국무브넥스 주식회사 정관

정 관 개 정

제 정	1974.07.15	13차 개정	1988.03.23
1차 개정	1976.03.23	14차 개정	1989.03.09
2차 개정	1977.01.31	15차 개정	1990.03.09
3차 개정	1977.05.21	16차 개정	1996.03.08
4차 개정	1978.08.01	17차 개정	1997.03.07
5차 개정	1981.03.05	18차 개정	2000.03.10
6차 개정	1981.10.07	19차 개정	2010.03.26
7차 개정	1981.10.09	20차 개정	2018.03.30
8차 개정	1982.10.04	21차 개정	2020.03.27
9차 개정	1983.03.07	22차 개정	2021.03.26
10차 개정	1984.10.04	23차 개정	2023.03.31
11차 개정	1986.03.21	24차 개정	2024.03.29
12차 개정	1987.07.17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 호)

본 회사는 “한국무브넥스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 "KOREA MOVENEX CO., LTD." (약호 KOMO)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프랜지의 제조 및 판매업
- 2) 산업기계의 제조 및 판매업
- 3) 철구조물의 제조 및 판매업
- 4) 탱크류 및 열교환기의 제조 및 판매업
- 5)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 6) 전 각호에서 파생하는 설물의 판매
- 7) 건설업
- 8) 부동산 매매업
- 9) 수출입업
- 10) 자유형 단조제품 제조업
- 11) 선박용 기자재 부품 제조업

- 12) 풍력발전 설비 부품 제조업
- 13) 발전 및 플랜트 부품 제작업
- 14) 철도차량 부품 제조업
- 15) 정밀기계 제작업
- 16) 철판 및 슬라브 도소매업
- 17) 풍력발전 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
- 18)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19) 태양광발전 및 전기판매업

제 3 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울산광역시에 둔다.
-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광고방법)

①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reamovenex.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오천만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일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8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수는 이백오십만주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9%이상 12%이내에 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 (신주인수권)

- ①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주주가 신주의 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하였을 때 또는 주식 배정시에 생기는 단주의 처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② 이사회는 제①조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제 10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리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 본 회사는 주식의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

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본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3 조 (기준일)

- ①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결의로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는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 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4 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 이사회는 결의로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채의 발행일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생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채의 발행일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6 조 (사채 발행에 관한 준용 규정)

제 11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7 조 (소집시기)

-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8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 34 조 제③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이사, 감사의 선임의 경우에는 이사,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을 통지, 공고하여야 함.

※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 사외 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을 통지, 공고하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정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제 20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1 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 34 조 제③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 (의장의 질서 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3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 의결권은 일주마다 일개로 한다.

제 24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본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5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0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그 뜻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언택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일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주주총회의 결의 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8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 29조 (이사 및 감사의 수)

-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 ② 본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 ③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30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③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1 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32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 ① 이사 또는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본 정관 제29조에서 정한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33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중에서 대표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고, 회장, 부회
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34 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대표이사가 수인일 때에는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
- ③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4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5 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 36 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37 조 (이사회 구성과 초안)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재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8 조 (이사회 결의 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은 제37조 제 ②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9 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 40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계산

제 41 조 (사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2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에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①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④ 제③항의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①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①항의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①항의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 (이익금의 처리)

본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① 이익준비금(상법상 준비금)

- ② 기타의 법정 적립금
- ③ 배당금
- ④ 임의적립금
- ⑤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 44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본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①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①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2024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